

하남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3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5. .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개정이유

- 「영유아보육법」이 개정·시행(2013.6.4.공포, 2013.12.4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‘보육정보센터’를 ‘육아종합지원센터’로 명칭 변경(안 제4조,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, 「하남시 보육 조례」

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입법예고기간 : 2015년 4월 8일 ~ 4월 22일(15일간)
- 나. 의견내용 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협의기간 : 2015년 4월 8일 ~ 4월 22일(15일간)
- 나. 협의내용 : 성별영향분석평가(원안동의)

9.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보육정책과

하남시 조례 제 호

하남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하남시보육조례”를 “하남시 보육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영유아 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를 “「영유아보육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에”로 한다.

제4조제5호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**육아종합지원센터**”로 한다.

제3장 제목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**육아종합지원센터**”로 한다.

제9조 제목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**육아종합지원센터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, 제2항, 제3항 및 제4항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각각 “**육아종합지원센터**”로 한다.

제10조 제목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**육아종합지원센터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**육아종합지원센터**”로, “보육정보센터의 장”을 “**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(이하 “육아종합지원센터장”이라 한다)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육정보센터장”을 “**육아종합지원센터장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**육아종합지원센터**”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육아종합지원센터)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12조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**육아종합지원센터**”로 한다.